

1.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 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·개정된 동 조례안중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적용범위와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건축연면적 12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의 설치등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(안 제3조제2항)
- 허용지역외의 지역이라도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(안 제4조제2항)
- 별표의 허용지역중 도로주변 지역내에서는 건축연면적 12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별표 제2호)

□ 검토의견

-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건축연면적 12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의 설치등의 경우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관련한 별표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지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동 조문을 삭제토록 한 것은 타당하고,

- 조례 제4조제2항의 허용지역이외의 지역이라도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내의 숙박업등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또한 상위법령에서 허용시설을 정하고 있어 조례로 추가 적용토록 한 것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- 또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지역을 정한 별표 2항 중 도로 주변지역내에서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하던 것을 건축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개정한 것은 대형·호화 음식점의 입지를 규제토록 한 것으로 사치와 낭비풍조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.
- 별표의 1항에서 7항까지의 제한지역별 이격거리를 “~미터 이상으로”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“~를 초과하여”로 이격된 지역으로 개정하여 이격거리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,
- 별표 3, 4, 5항의 산림지역, 농지지역, 문화재보호구역 등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중복적용됨에 따라 삭제토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